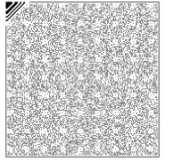




## 보건복지부



수신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, 복지세상사회적협동조합, 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  
(경유)

제목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협동조합의 총회 개최(서면총회) 관련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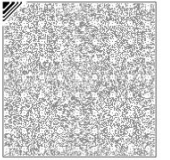
1.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-186(2020.3.2.)호 관련입니다.
2. 최근 코로나 19 확산(2.2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"심각"으로 상향)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보고서 등 **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감염위험으로 대면 총회\***를 개최하지 못하여, **관련 후속 절차, 사업추진 또는 법적의무 이행 준비(법인세 신고 등)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발생**하고 있습니다.
  - \*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상 협동조합은 총회를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(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제5항, 제29조제2항, 제30조제2항 등).
3. 이에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상 협동조합(일반협동조합, 일반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)에 대해 **서면총회 개최방식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**하고자 하오니 업무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가. (허용기간) 3.2(월) ~ 추후 재공고시 까지
- 나. (의결안건)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, 결산보고서·감사보고서의 승인 등, 다만, 정관변경 등 **중요사항\***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
  - \* 조합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(기본법 §29 ②): 정관변경, 합병·분할·해산·휴업, 조합원 제명,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
- 다. (사전절차) 서면총회 개최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
- 라. (사후조치) 개최결과 공유(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)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(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)
  - ※ 특히,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 공유 필요

<관련문의>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(044-215-5934, 5936)  
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(031-697-7731~7735)  
 조합 소재지역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(17개)

붙임 협동조합 대상 공지내용(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) 각 1부. 끝.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주무관

남봉수

사회서비스자 전결 2020.3.3.

원과장 임혜성

협조자

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-1187 (2020. 3. 3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6층 사회서비스자원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3257 팩스번호 044-202-3958 / [bossnam11@korea.kr](mailto:bossnam11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